

충남대학교 대학원 신소재공학과 학위청구논문제출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10.31.
1차 개정	2014.05.09.
2차 개정	2015.03.12.
3차 개정	2015.11.17.
4차 개정	2016.07.27.
5차 개정	2018.11.28.
6차 개정	2018.12.24.
7차 개정	2019.09.18.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신소재공학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및 자격요건)

-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하며, 응시과목은 석사학위과정과 학·석사연계 과정은 3과목,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 ③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④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주임교수가 위촉한다. 또한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05.09.)
- ⑤ 응시자는 한 출제위원이 출제하는 과목 중 2 과목을 초과하여 선택할 수 없다.
- ⑥ 자격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5조(논문지도위원회) ①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11.17.)

- ②논문지도위원회는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 제청에 의하여 학과주임교수가 구성한다.(개정 2014. 5. 9.)(개정 2015.11.17.)
- ③논문지도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5. 9.)(개정 2015.11.17.)
- ④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수료3학기(박사 7학기까지) 이전까지 논문연구계획을 공개발표 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개정 2015.11.17.)
- ⑤논문연구계획 심사를 승인 받은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심사 완료 학기 이후 2학기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한다. 단,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가 어려운 경우 지도교수가 논문심사지연사유 및 계획을 학과 주임 교수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한다. (개정 2014.05.09.)

제6조(외국어능력기준)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논문 접수 시 [별표1]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외국어 점수를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3.12.)

②1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센터의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3.12.)

③외국인 학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3.12.)

1.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개정 2016. 7.27.)
2.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센터 및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관련 강좌 40시간 이상 이수(개정 2016. 7.27.)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석사학위과정 및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은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거나 관련 학회에서 1회 이상을 발표하여야 한다. 단, 국가 지원 사업(BK, WCU 등)에서 지원 받은 학생은 제1저자로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05.09.) (개정 2016.07.27.)

②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하여야 한다. 단, 국가 지원 사업(BK, WCU 등)에서 지원 받은 학생은 SCI(E) 논문 3편 이상 게재 (제1저자로 2편 이상, 제1저자 2편 중 상위 20% 1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상위20% 적용시기는 투고 또는 게재 승인 시점을 모두 인정한다. (개정 2016.07.27. 개정 2018.11.28.)

③논문발표 및 학술발표는 다음의 사항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1. 발표된 모든 논문은 석·박사 학위논문 주제와 관련 되어야 한다.
2. 발표된 모든 논문은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하며 충남대학교 소속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9.)

3. 논문이 게재된 국내 학술지는 학진등재지 이상 급으로 하며, 국외 학술지는 국제전문학술지 이상급으로 한다.(개정 2015.11.17.)
4. 제출된 논문이 타 학생의 졸업자격 조건에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5. 대학원에서 공시하는 청구논문 신청기간 중에 논문의 학술지 게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가 확인되어야 한다.
 - 가. 청구논문 신청 시에는 논문이 투고 중임이 확인 되어야 한다.
 - 나. 본 심사 이전까지 게재예정증명서 또는 출판된 논문이 제출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8.)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13.10.31.)

-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단, 제5조(논문지도위원회)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재료공학전공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정부출연연구소 또는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시간제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도교수의 재량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지도교수별로 1인의 학생에 한하며, 해당 학생이 추후 의무조건을 만족시켰을 경우에는 다른 학생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의무조건을 유예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신소재공학과 응용소재 및 재료공학전공 세칙은 폐지한다.

부 칙(2014. 5. 9.)

-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2013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신소재공학과 학생은 종전 재료공학전공 세칙에 따른다. 단, BK21 플러스사업에 참여하는 전일제 학생 중 3학기 이상 혜택을 받은 학생은 본 세칙을 적용 받는다.
- 제3조(예외조치) 국가 지원 사업(BK, WCU 등)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으로써 수료 후 일정 기간(석사과정 3년, 박사과정 5년) 경과 시 해당 졸업요건을 적용치 아니한다.

부 칙(2015.3.1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신소재공학과 학생은 종전 세칙에 따른다.

부 칙(2015.11.17.)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종전 신소재 공학과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6.07.27.)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종전 신소재 공학과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제7조 학술지게재의무조건외 “국가 지원 사업(BK, WCU 등)에서 지원 받은 학생”은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인외국어시험 기준 점수

과 정	종 별	영어기준점수	제2외국어	
석사/ 박사	TOEIC	600	없음	
	TOEIC-S	80		
	OPIc	IM1		
	TEPS	476		
	TOEFL	PBT		490
		CBT		163
		IBT		57

부 칙(2018.11.28.)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종전 신소재 공학과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2017학년도 입학자까지 제7조 ②항의 상위 20% 적용시기를 두고 또는 게재 승인시점 모두 인정하며, ③항의 게재 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종전 신소재 공학과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제7조 학술지게재의무조건의 “국가 지원 사업(BK, WCU 등)에서 지원 받은 학생”은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또한 2017학년도 입학자까지 제7조 ②항의 상위 20% 적용시기를 두고 또는 게재 승인시점 모두 인정하며, ③항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19.9.18.)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종전 신소재공학과 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제7조 학술지게재의무조건의 “국외학술지는 국제전문학술지 이상급으로 한다” 및 “국가 지원 사업(BK, WCU 등)에서 지원 받은 학생”은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또한 2017학년도 입학자까지 제7조 ②항의 상위 20% 적용시기를 두고 또는 게재 승인시점 모두 인정하며, ③항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